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회의실·강의실·교육장 이용에 관한 약관(안)]

**제1조 [목 적]**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회의실·강의실·교육장·물품(이하 “시설” 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약관( 이하 “약관” 이라 한다)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이 개방하는 시설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 목적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에서 개방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정부 ‘알리오플러스’ , ‘공유누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한다.

**제3조 [사용기간]** ‘사용자’ 가 정부의 공공개방자원 플랫폼에서 신청 가능한 날짜 중 희망일을 지정하여 신청한다.

**제4조 [신청 및 취소]** 대관 목적물 신청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일 2개월 전부터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1. 신청 후 ‘공단’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 사실을 알린 후 승인여부 확인
2.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을 취소해야 할 경우 대관 3일 전까지 취소 및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알림

**제5조 [대관료]** 공공개방 대상 시설 지정으로 무상 대관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대관 재산의 보존]** ① ‘사용자’ 는 대관 시설·재산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고, 대관 재산 보존에 책임을 다한다.

1. 빔 프로젝트, 마이크, 노트북 등 음향·영상 장비
2. 의자, 시설 기물 등 비품
3. 기타 ‘공단’ 자산 물품 및 시설물 등

② ‘사용자’ 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공단’ 의 재산상 손해(파손, 도난 등 포함)를 끼쳤을 경우에는 ‘사용자’ 가 이를 변상하는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제7조 [사용자의 금지사항]** ‘사용자’ 는 ‘공단’ 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기타 공용시설에 간판, 광고물의 설치, 게시, 부착 또는 각종 기기의 설치 행위
2. 위험성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반입 및 보관행위
3. 수익 창출을 위한 대관

4. 허가없이 냉·난방 기자재를 반입하거나 시설물의 냉·난방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5. ‘공단’의 동의 없이 시설물의 이동·변경 배치 행위
6. ‘공단’의 동의 없이 장비·중량물을 반입하는 등의 행위
7. 목적 대관물(위생시설 포함) 외 출입행위
8.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해하는 행위
9. 알코올성 음료 및 식음행위
10. 흡연행위 및 음식물의 반입·취식행위
11. 대관을 제 3자에게 위임하는 행위
12. 소비전력이 높은 기자재를 반입 후 사용하는 행위
13.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 외에 ‘공단’에 필요에 따라 유선 또는 서면으로 금지하는 행위

**제8조 [대관의 중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대관을 즉시 중지할 수 있다.

1.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사용자’가 제7조 [사용자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가 합당한 사유없이 신청 후 사용을 하지 않거나, 취소 사실을 ‘공단’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경우
4. ‘공단’의 재산의 파손, 도난, 훼손한 경우

**제9조 [대관의 반환]** 대관 기간이 끝난 ‘공단’의 시설·재산에 대한 반환은 ‘공단’의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책임]** ‘사용자’는 ‘공단’의 ‘시설’ 대관 이용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감독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와 감독 소홀 등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공단’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1조 [분쟁]** 위 각 ‘약관’ 조항에 관하여 의문, 쟁의, 또는 명시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로써 해결하도록 한다.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사용자 (소속)

(연락처)

(성함)

(서명(인))